

##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21. 12. 28 조례 제179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견학”이란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의회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의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
2.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
3.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견학의 신청 및 허가)**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를 의장이 허가한다. 이 경우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② 의회의 견학 시간은 10:00부터 17:00까지로 한다.

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. 다만,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견학의 제한)**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6조(결과보고)**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